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87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1. 국립묘지 안장 대상 관련 규정	9
2. 국방기술품질원과 타 정부출연기관 간 규제 및 특례규정 비교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8. 6.
3. 회부연월일: 2024.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

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 ----- ----- 「형법」이나-----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 현행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와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¹⁾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자. (생략)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 및 의상자(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하. (생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1) 참고자료: 국립묘지 안장 대상 관련 상세 규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5. (생략)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또한,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²⁾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무기개발과 관련한 폭발업무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방위사업법」에 마련하여 국방

2)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기술품질원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탄약류 저장 수명시험, 박격포탄류의 폭발고도시험 등 위험한 업무 수행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국가공무원 의제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적용대상은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로 극히 한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의제조항이 2015년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사례]

연번	직급	성명	순직일	순직 사유
1	선임연구원	기○○	'19.11.13.	시험 중 폭발사고
2	책임기술기사 (전문계약직)	김○○	'23.12.21.	화약 폭발사고

*자료: 국방부

□ 다만,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법을 개정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 및 관리, 품질보증(유도탄 추진제 지상연소시험, 탄약류 저장 수명 시험, 박격포탄류의 폭발고도시험 등의 수락시험) 등을 수행하는 국방분야 연구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방산물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⁴⁾

유사한 취지에서 방위사업청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복무 및 처벌 등과 관련하여 민간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비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⁵⁾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3)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유일함.

4) 유사한 취지에서 방위사업청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복무 및 처벌 등과 관련하여 민간연구기관의 임직원에게 비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5) 참고자료: 국방기술품질원과 타 정부출연기관 간 규제 및 특례규정 비교

임직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 반면,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위사업법」이 아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국립묘지 안장 대상 관련 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 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사. 군인 ·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 · 퇴역 · 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 · 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 및 의상자(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사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국방기술품질원과 타 정부출연기관 간 규제 및 특례규정 비교

구분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법)
규제	● 비밀의 엄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 준용 ●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비밀의 엄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 준용 ●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비밀 유지의 의무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 「형법」 제129조~제132조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특례	●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 가능	● 「<u>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 의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 가능,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 가능